

# 학적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24. 06. 17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에서 정하지 못한 학적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적변동의 전반에 적용하며, 상위법 및 특별한 규정 또는 총장의 허가를 얻은 사항은 본 규정에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2장 편입학

**제3조(편입학의 정의)** 타 대학에 재적하였거나 재적하고 있는 자를 당해 학칙에 따라 편입학 전형을 거쳐 우리 대학의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편입학 자격)** ①학칙 제18조(편입학)은 편입 학년 학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자격을 가져야 한다.

구 분		지원자격
2학년 1학기 편입	국내·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② 전문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칙 제57조의 2항의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제적(자퇴포함)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칙 제57조의 2항의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①~③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 학습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학칙 제57조의 2항의 1학년 수료학점 이상인자
3학년 1학기 편입	국내·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② 전문대학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칙 제57조의 2항의 2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제적(자퇴포함)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제57조의 2항의 2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①~③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 학습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학칙 제57조의 2항의 2학년 수료학점 이상인자
2학기 편입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① 재외국민 및 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 제2호, 제6조, 제7호에 한함) ② 국외 대학의 경우, 국내의 전문대학 혹은 일반대학에 준하는 외국 소재 정규대학교(사이버대학은 제외)의 수험한자 ③ 2학기 편입의 경우, 편입 기준 하위 학년으로 편입한다. ④ ①,②,③의 기준은 2학년 1학기 편입, 3학년 1학기 편입 기준에 따른다.

② 편입학 세부 전형기준은 매 학년도(학기)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미 입학한 경우라도 입학을 취소하고 납부한 등록금(수업료 등)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칙에 따른다.

**제5조(편입학의 여석)** ① 제3조에서 정한 편입학은 모집단위(전공) 별로 여석이 있을 경우, 모집단위(전공)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여석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편입학의 등록 및 허가)** ① 편입학자의 등록은 재학생에 준한다.

② 편입학의 허가 및 기타 세부 사항은 편입학 당시 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한다.

**제7조(편입학 학점인정)** ① 편입학 사정시 각 호의 최대학점 기준에 따라 “전공선택” 혹은 “일반선택” 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1학년 2학기 편입 : 인정하지 않음

2. 2학년 1학기 편입 : 학칙 제57조 2항 1학년 수료 학점 이하

3. 3학년 1학기 편입 : 학칙 제57조 2항 2학년 수료 학점 이하

4. 1,2,3호에 포함되지 않는 편입의 학점인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 학적 관련부서에서 학력조회를 진행해야한다. 단, 편입학 허가 시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편입학자이 허가된 자는 허가된 학기부터 편입한 모집단위(전공)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 제3장 재입학

**제8조(재입학의 정의)** 대학에 재적하였던 사실이 있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탈락 하였으나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업의 기회를 얻어 다시 수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재입학의 자격)**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1.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기타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정한 자

**제10조(재입학의 여석)** ① 제8조에서 정한 재입학은 총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제적 당시 모집단위(전공)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적 당시 모집단위(전공)이 모집정지된 경우는 학칙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입학 여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정원을 정하는 모집단위(전공)

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단위(전공)

**제11조(재입학의 허가 및 등록)**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총장이 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지도교수와 상담해야 한다.

②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학기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재입학을 최종 허가하며 개강일 이후 3주(21일)이내에 최종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재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재입학 신청자의 등록금(수업료 등) 및 납부방법은 재학생에 준한다.

**제12조(재입학자의 성적처리)** ① 재입학생은 재입학이 허가된 학기 이전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② 조기재입학(자퇴 및 제적된 학기가 아닌 직전 학기에 재입학하는 것)학생이 기 취득한 성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조기재입학 신청시 성적취소 내용도 포함하여 해당 학기 성적일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4장 전과

**제13조(전과의 정의)** 입학한 모집단위(전공)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모집단위(전공)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전과의 범위 및 여석)**

① 전과의 범위는 모든 모집단위(전공)로 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경우,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단위(전공)
2. 상위 법령에서 정원을 정하는 모집단위(전공)
3. 모집정지된 모집단위(전공)

② 전과의 전입 여석은 학년도 학기별 총장이 정할 수 있으며 스쿨(전공) 및 교육과정의 특성과 수용능력 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단, 전출 여석은 제한하지 않는다.

③ 전과 전입 여석은 모집단위(전공)별 학년별로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사전 공지한다.

**제15조(전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① 전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1개 학기 이상을 등록 및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전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격이 갖춰진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하고 지도교수와 상담해야 한다.

③ 전과는 매 학기 시작 전 신청기간을 두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모집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전문학사학위 편입생,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은 전과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학제(1년제, 2년제, 3년제 등)가 서로 다른 경우, 전과할 수 없다. 단, 모집정지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칙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전과 절차 및 허가)** ① 전과 절차는 모집단위(전공)별로 정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기간 내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사전 공지한다.
- ② 전과 절차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전체 평점평균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단, 스쿨(전공)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시험 등 별도 절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 ③ 전과 무시험 선발 중 전체 평점평균이 같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해 선발한다.
1. 백점환산점수가 높은 자
  2. 전체 취득학점이 많은 자
  3. 전공 취득학점이 많은 자
  4. 1,2,3호가 같은 경우, 선발여부는 스쿨에서 정한다.
- ④ 전과 절차 중 선발 최소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최소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여석과 관계없이 전과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전과 신청 받은 모집단위(전공)는 정해진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스쿨 원장의 승인)하고 최종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전과 학점인정)** ①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과 전 취득한 전공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전과 절차 중 전입 모집단위(전공)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과가 승인된 학기부터 모집단위(전공)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전과 허가자의 등록)** 전과가 승인된 자의 등록금(수업료 등)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칙에 따른다.

## 제5장 휴학

- 제19조(휴학)** ① 병역의무,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규학기 수업일수 1/4를 초과하여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휴학 신청하고 지도교수와 상담해야 한다.
- ② 휴학은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기타휴학으로 구분하며, 휴학별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기간	필요서류
일반휴학	1년(2학기)이내	휴학계획서 등
군입대휴학	의무복무기간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등
질병휴학	1년(2학기)이내	4주이상 진단서 등
임신·출산및육아휴학	자녀당 1년(2학기)이내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휴학	1년(2학기)이내	관련 증빙서류

③ 휴학은 1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휴학의 경우, 연속 횟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군입대휴학(의무복무에 한함)
2. 질병휴학
3.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4. 기타 총장이 횟수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허가한 휴학

**제20조(휴학자의 등록금 처리)** ① 등록한 마친 학생이 수업일수 1/2선 이내에 일반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기타휴학 할 경우, 복학학기(조기복학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의 등록금(수업료 등)을 면제한다. 단, 수업일수 1/2선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 성적 취득 여부 및 등록금 처리방식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칙에 따른다.

② 등록한 마친 학생이 군입대 휴학할 경우, 군입대 일자가 수업일수 3/4선 이내인 경우, 해당학기 성적을 취득할 수 없으며, 복학학기(조기복학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의 등록금(수업료 등)을 면제한다. 단, 군입대 일자가 수업일수 3/4선을 초과하는 경우, 성적 취득 여부 및 등록금 처리방식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칙에 따른다.

**제21조(휴학의 제한)** ① 각 호에 대상 및 학기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1. 신입생의 최초 정규학기
  2. 편입생의 최초 정규학기
  3. 재입학생의 재입학이 허가된 최초 정규학기
  4. 전과 허가 직후 정규학기
  5. 조기 복학한 정규학기
  6. 졸업유예가 승인된 후 모든 학기
  7. 등록금 분할 납부를 신청한 학기(최종 완납한 경우는 예외로 함)
  8. 기타 총장이 휴학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한 대상이나 학기
- ② 모집정지된 모집정원(전공)의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학년별 전공유지기간 후 휴학 및 휴학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며 휴학기간 종료시점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한다.
- ③ 의무 복무를 제외한 군복무(직업 군인 등)인 경우 군입대휴학이 아닌 일반휴학으로 처리한다.

**제22조(휴학의 연장)** ① 휴학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휴학의 사유가 계속되는 등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간 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하고 지도교수와 상담해야 한다.

②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휴학으로 휴학연장한 경우, 기존 일반휴학을 군입대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휴학취소)** ① 휴학을 신청한자가 휴학사유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업일수 1/4선 이전

에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스쿨 및 관련부서에 즉시 연락하고 조치받아야 한다.

- ② 군입대 휴학 후 귀향자는 원인발생 1주일 이내에 관련서류(귀향증 등)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단,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한 경우, 일반휴학으로 휴학연장 처리할 수 있다.

## 제6장 복학

- 제24조(복학)** ① 제19조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경우, 수업일수 1/4선 이내 절차를 통해 복학신청해야한다. 조기복학의 경우, 복학 신청 후 지도교수와 상담해야한다.
- ② 제19조에 의한 군입대 휴학자 중 제대일자(휴가 등 포함)가 수업일수 1/4선을 경과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서류(전역예정증명서, 잔여휴가 확인서 등)를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절차를 통해 복학 신청할 수 있다.
- ③ 조기복학(기이수한 학년 및 학기의 성적을 갱신하고자 복학예정 학년 학기 이하로 복학하는 것을 말한다)학생이 기 취득한 성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조기복학 신청시 성적 취소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학기 성적일체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모집정지된 모집단위(전공)의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학년별 전공유지기간 후 동일한 모집단위(전공)으로 복학할 수 없으며 세부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 제7장 자퇴 및 제적

- 제25조(자퇴)**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상담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절차를 통해 신청하고 지도교수 상담 및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자퇴한 자가 납부한 등록금이 있는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칙에 따른다.

**제26조(제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하여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재학 중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
  4. 본인 사망
  5. 기타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납부한 등록금(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칙에 따른다.

## 제8장 학사경고, 진급, 유급

**제27조(학사경고)** 정규학기에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이 1.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기별 학습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학사경고를 부여한다.

**제28조(진급 및 유급)** ① 이전학년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위학년에 진급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진급사정회에서 결정된 자로 한다.

② 동일학년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과 학칙 제57조 2항의 학년별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유급(상위학년으로 진급을 제한)처리한다.

**제29조(학사경고자 및 유급에 대한 후속조치)** ①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보호자 포함)에게 그 사실을 성적표 등에 표기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교무 관련 부서는 학사경고 사실을 스쿨에 통보해야한다.

③ 학사경고 및 유급처리된 학생의 지도교수는 학년에 따른 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을 지도해야한다.

## 제10장 보고

**제30조(보고)** ① 해당 규정에 포함된 학적처리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적 관련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보고해야 하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히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③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보고해야한다.

1. 고등교육통계조사 등에 따른 재학생 총원율(04.01일자, 10.01일자)
2. 학기별 복학 현황
3. 학기별 제적 현황
4. 학기별(전기,후기) 졸업 현황
5. 학기별 학사경고 현황
6. 월별 자퇴 현황
7. 월별 휴학 현황
8.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자료

④ 학적관련 현황을 보고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은 반드시 포함한다.

1. 모집단위(전공) 구분
2. 정원내외 구분
3. 학년 구분
4. 전년대비 구분
5.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구분 값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